

UCP 해설

유 하상

■ 제2조 조문해석

지급이행(honour)이라 함은 다음을 말한다.

- a. 신용장이 일람지급에 의하여 사용될 수 있는 경우 일람후 지급하는 것.
- b. 신용장이 연지급에 의하여 사용될 수 있는 경우 연지급확약의무를 부담하고 만기일에 지급하는 것.
- c. 신용장이 인수에 의하여 사용될 수 있는 경우 수익자에 의하여 발행된 환어음(“어음”)을 인수하고 만기일에 지급하는 것.

발행은행(issuing bank) : 발행의뢰인의 요청에 따르거나 또는 그 자신을 위하여 신용장을 발행하는 은행

매입(Negotiation) : 상환이 지정은행에 행해져야 할 은행영업일에 또는 그 이전에 수익자에게 대금을 선지급하거나 또는 선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일치하는 제시에 따른 환어음(지정은 행이 아닌 은행을 지급인으로 하여 발행된) 및/또는 서류의 지정은행에 의한 구매를 말한다.

지정은행(Nominated bank) : 신용장이 사용될 수 있는 은행 또는 모든 은행에서 사용될 수 있는 신용장의 경우에는 모든 은행

제시(Presentation) : 발행은행 또는 지정은행에게 신용장에 의한 서류를 인도하는 행위 또는 그렇게 인도된 서류.

제시인(Presenter) : 제시를 행하는 수익자, 은행 또는 기타 당사자

제2조 정의

제2조

■ 제2조 주요 내용

신용장 사용방법(honor의 정의 추가)

- ✓ UCP500 : 지급, 환어음의 인수, 매입으로 규정
- ✓ UCP600 : 일람지급, 연지급, 환어음의 인수 및 매입으로 구분,
- ✓ Honour란 용어를 새롭게 정의 : 일람지급, 연지급, 환어음의 인수를 모두 포함하는 상위의 새로운 개념으로

통지은행

- ✓ 주로 개설은행의 해외지점이나 환거래은행이 된다.
- ✓ 간혹 통지은행이 신용장 및 조건 변경을 수익자에게 직접 통지하지 않고 다른 은행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 이용되는 다른 은행을 제2통지 은행이라고 한다.

개설의뢰인

신용장 개설을 요청한 당사자(party)

- ☞ ‘당사자’라는 의미를 신용장 하에서 개설신청인이 의사 결정의 지위에 있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도록 주의. 개설 의뢰인은 신용장 거래(혹은 신용장 취소)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 그럼에도 당사자(PARTY)라고 표현한 이유는, 적절한 단어가 없었기 때문

제2조 정의

제2조

■ 제2조 주요 내용

은행영업일(Banking day)

☞ 은행이 정식으로 영업 하는 날.

- 1) 은행이 정식으로 영업 중(regularly open) 일 것,
- 2) 신용장 개설, 조건변경, 지급, 매입 등의 기능을 수행하면서 영업을 할 것의 두 가지 원칙이 모두 성립해야 함

두 번째 원칙은 몇몇 국가에서 토요일 아침에 은행 영업을 하지만 소매금융 업무(예금, 인출 등)만을 목적으로 영업을 영위하는 상황을 고려하기 위한 것. 이 경우 은행은 '정식으로 영업'은 하지만 이 규칙에서의 영업을 하는 것은 아니다.

취소불능(가능)신용장

- ✓UCP 500 : 취소가능 혹은 취소불능의 두 가지로 정의
- ✓UCP 600 : 그 명칭과 관계없이 취소 불능한 약정이라고 정의하여 취소가능 신용장의 적용 자체를 배제. 즉 신용장은=취소불능신용장과 동의어로 사용하고 있다

개설은행

일부 신용장의 경우 개설은행이 개설의뢰인이 되고 수입상이 운송서류의 통지처가 되도록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개설은행이 그 자신을 위해 개설한 은행이 된다.

제2조 정의

제2조

■ 제2조 주요 내용

일치하는 제시(complying presentation)'

❖ 일치성 판단기준

- ✓ 서류만을 기준으로 하여 문면상(on its face)으로만 일치하는 제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는 점은 UCP 500와 같음.
- ✓ 문면상이란 용어는 이 조항을 제외하고 다른 곳에서는 모두 삭제. 은행의 서류심사 의무 강화된 것

❖ 서류심사기준 4가지.

- ✓ 거울 이미지 기준 : 엄격일치 기준. 현재의 실무계의 현상과는 동떨어진 것
- ✓ 실질적 일치 기준 : 사소한 하자가 있더라도 대금지급거절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것.
- ✓ 이중적 기준 : 개설은행에게는 엄격일치의 원칙이 적용/ 개설의뢰인에게는 실질적 일치의 기준이 적용
- ✓ 합리적 서류 심사자 기준: UCP 600에서는 이 기준이 적용. 모순이 되지 않으면 됨, 사소한 타이핑 실수가 하자가 되지 않는 구체적인 사례를 명시(ISBP)

☞ 일치하는 제시

- 1) 신용장 조건, 2) UCP 600의 적용 가능한 조항, 3) 국제표준은행관행을 동시에 충족

제2조 정의

제2조

■ 제2조 주요 내용

⑨ 확인

일치하는 제시에 대하여 결제(honour) 또는 매입하겠다는 개설은행의 확약에 추가하여 확인은행이 하는 확인

<표> SWIFT 신용장의 확인에 대한 지시

CODE 명	CODE의 의미
CONFIRM	전문 수신인(대개 통지은행)에 대해 확인을 요청한다.
MAY ADD	전문 수신인(대개 통지은행)은 확인을 할 수 있다.
WITHOUT	전문 수신인(대개 통지은행)에 대해 확인을 요청하지 않는다.

■ 제2조 주요 내용

-비수권확인(silent confirmation)이란?

수출상의 거래 은행이 신용장 거래 은행의 요청이나 수권 없이 신용장 조건과 일치하는 제시에 대해 개설은행의 확약에 추가하여 확정적인 지급을 확약하는 것

확인과 다른 점

- 1) 개설은행의 확인에 대한 요청이나 수권이 없으며,
- 2) 비수권 확인자는 확인은행과는 달리 신용장 거래의 당사자가 아니며, 단지 신용장 수익자와의 별도 계약 약정에 의하여 수익자에게 지급 확약을 하며,
- 3) UCP에서 규정하지 않은 실무절차라는 점

따라서 비수권 확인자는 확인은행에 비해 일반적으로 더 큰 위험을 안고 거래를 하게 됨 (다만 비수권 확인자가 신용장 수익자와 별도 약정을 하여 고객에게 소구권을 행사한다거나 다른 안정책을 마련한 경우, 오히려 확인은행보다 비수권 확인자가 위험이 더 적을 수도 있다.)

비수권 확인이 생기는 주된 이유

- 1) 개설은행이 확인신용장 개설 요청을 하게 되면, 개설은행의 신용도에 좋지 않은 영향이 미칠 것을 우려하여 확인신용장의 개설을 꺼리기 때문,
- 2)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용장 수익자는 개설은행의 국가 신용도 등이 낮으면 수출상 거래은행에 대해 신용장의 확인을 요청하기 때문

제2조 정의

제2조

■ 제2조 주요 내용

결제(honor)의 의미

연지급신용장 만기전 지급에 대한 법률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수신용장과 연지급신용장을 동일 선상에서 규율하기 위하여 개설은행과 확인은행의 최종적인 책임에 관한 “Honour”의 개념을 새로이 도입

그러나 Honour의 개념 도입만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어 은 연지급신용장의 만기 전 대금지급에 대하여 보다 더 분명히 규정(제7조, 제8조, 12조 등에서)

☞ 신용장의 이용 방법으로는 매입(negotiation), 일람지급(sight payment), 연지급(deferred payment), 인수(acceptance)가 있는데, Honor는 이 중에서 매입을 제외한 지급, 연지급, 인수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사용.

지정은행

- ✓ 지급, 연지급, 인수 또는 매입을 할 수 있도록 신용장에서 권한을 받은 은행. 개설은행이 특정은행을 지정할 수도 있고, 모든 은행이 지정은행이 될 수 있도록 할 수도 있음.
- ✓ SWIFT 신용장에서는 41 Field의 이용 가능 조건에서 “available with ABC bank by 로 되어 있으면 ABC 은행이 지정은행이 되며, available with any bank by로 되어 있으면 모든 은행이 지정은행이 된다.
- ✓ 지정(nomination)에 대해서는 제13조 참조

■ 제2조 주요 내용

‘매입(Negotiation)의 의미

❖ 매입에 대한 개념을 명확하게 재정의

Negotiation'의 범위 확대 그 개념을 단순히 환어음이나 서류를 사전매입하고 대가를 지불하는 행위에 한정

❖ 매입의 범위 확장

✓UCP 500 : 환어음이나 서류를 사전매입하고 대가를 지불하는 행위

✓UCP 600 : 대가를 즉시 지급하는 것 외에 지정은행이 대금을 상환 받기 이전에 대금 지급할 것을 동의하거나 사전금융을 제공하는 것 까지도 'Negotiation'의 범위에 포함

❖ 매입의 조건

- 1) 매입의 주체 : 지정은행이고, 지정은행이 아닌 은행이 하는 것은 정당한 매입이 아님
- 2) 일치하는 제시 : 매입하기 위한 서류나 어음의 조건은 일치하는 제시이어야 함
- 3) 매수(purchase) : 매입의 정의는 매수하는 것. 매수의 방법은 대금을 바로 지급하거나, 상환의무가 있는 은행영업일 또는 그 이전에 대금을 지급하기로 동의하는 방법에 의함
- 4) 환어음 및/또는 서류 : 매입하기 위해서는 환어음이 있는 경우에는 환어음을 포함하고, 환어음이 없는 경우는 서류를 매수하는 것
- 5) 결국 매입이란 지정은행이 일치하는 제시에 대해 환어음 및/또는 서류를 매수하는 것

❖ 지급이 아닌 여신의 공여

“환어음의 가액을 공여”란 표현을 “환어음 및 선적서류를 사는 것”이라고 함으로써 매입 은행이 수익자에게 매입대전을 제공하는 것이 신용장의 대금의 지급이 아닌 일종의 여신의 제공임을 더욱 분명히 함. 즉, 매입은행이 개설은행으로부터 신용장의 대금의 지급을 받기 이전에는 신용장의 거래가 끝난 것이 아님을 더욱 분명히 한 것

■ 제2조 주요 내용

제시

신용장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개설은행 또는 지정은행에 대한 서류의 인도 또는 그렇게 인도된 그 서류 자체를 의미

1) 신용장 조건하에서 서류의 인도

서류를 개설은행이나 지정은행에 발송한 것을 의미한 것이 아니라 당해 은행에 접수되는 것을 기준으로 함

2) 인도된 서류 자체

개설은행이나 지정은행이 서류의 검토를 시작하지 않더라도 인도된 서류가 있다면 제시로 간주됨

제시자

수익자나 제시를 하는 은행뿐만 아니라 다른 당사자 모두를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수익자, 매입은행이 제시자가 될 수 있다. 즉 선적서류를 인도하는 당사자를 의미한다.

■ 제3조 조문 해석

이 규칙에서:

- ✓단수형 단어는 복수형을 포함, 복수형 단어는 단수형 포함
- ✓취소불능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도 취소불능
- ✓서류는 수기, 모사서명, 천공서명, 스탬프, 상징 또는 기타 모든 기계적 또는 전자적 인증방법에 의하여 서명 가능
- ✓공인, 사증, 증명된 또는 이와 유사한 서류의 요건은 그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이는 서류상의 모든 서명, 표시, 스탬프 또는 부전에 의하여 충족
- ✓다른 국가에 있는 어떤 은행의 지점은 독립된 은행으로 본다.
- ✓서류의 발행인을 기술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일류의(first class)”, “저명한(well known)”, “자격 있는(qualified)”, “독립적인(independent)”, “공인된(official)”, “유능한(competent)” 또는 “국내의(local)”와 같은 용어는 수익자 이외의 모든 서류발행인이 서류를 발행하는 것을 허용한다.
- ✓서류에 사용될 것이 요구되지 아니하는 한, “신속한(prompt)”, “즉시(immediately)”, “가능한 한 빨리(as soon as possible)”와 같은 단어는 무시
- ✓“~경에(on or about)” 또는 이와 유사한 표현은 사건이 명시된 일자 이전의 5일부터 그 이후의 5일까지의 기간 동안에 발행하는 약정으로서 초일 및 종료일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

■ 제3조 조문 해석

- ✓ “to”, “until”, “till”, “from” 및 “between”라는 단어는 선적기간을 결정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경우에는 언급된 당해 일자를 포함, “before” 및 “after)”라는 단어는 언급된 당해 일자를 제외
- ✓ “from” 및 “after”라는 단어는 만기일을 결정하기 위하여 사용된 경우에는 언급된 당해 일자를 제외
- ✓ 어느 개월의 “first half”, “후반(second half)”이라는 용어는 각각 해당 개월의 1일부터 15일까지, 그리고 16일부터 말일까지로 하고, 양끝의 일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
- ✓ 어느 개월의 “상순(beginning)”, “middle” 및 “end”이라는 용어는 각각 해당 개월의 1일부터 10일까지, 11일부터 20일까지, 그리고 21일부터 말일까지로 하고, 양끝의 일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

■ 제3조 주요 내용

취소가능신용장

신용장에 취소가 가능하다는 표현이 있으면 수익자와 매입은행에 상당히 불리한 조건이 되므로, 취소불능 신용장으로 조건 변경을 받도록 해야 함

- 예컨대 러시아, 오만, 볼리비아의 경우 국내법으로 신용장 취소 가능성 여부에 대해 아무런 언급이 없으면 취소 가능 신용장으로 간주하고 있다.

* 조건부 취소불능 신용장 : "Irrevocable"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조건들

-Shipment or negotiation is subject to our further instructions.

(선적 또는 매입은 이후 개설은행의 지시에 따를 것)

-The name of ship will be indicated by us.

(선박명은 개설은행이 지명할 것임)

-The invoice must be countersigned by Buyer's Agent, ABC Co.

(송품장은 매입자의 지사 ABC회사의 서명(부서)이 되어야 함)

-Payment will be made only on realization of Export proceeds against export L/C No. XXX.

(수출 신용장 000에 상응하는 수출이행이 수행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지급)

- L/C will be operative when the Applicant obtain I/L from the Authorities.

(신용장은 개설의뢰인이 당국의 수입허가를 획득할 경우에 발효됨)

■ 제3조 주요 내용

서명

신용장에서 육필서명이나 자필을 명시적으로 요구하지 않는 한 어떠한 방법으로든 서명할 수 있음

공증, 사증, 공인 또는 이와 유사한 서류의 요건은 그 요건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서류상의 모든 서명, 표시, 스탬프 또는 라벨에 의해 만족될 수 있음

이는 신용장의 조)는 추상성 때문에 실질 관계의 서명 표시, 스탬프 또는 라벨에 대한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요건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서명, 표시, 스탬프 또는 라벨에 대한 판단을 한다는 것을 의미(은행이 일일이 확인불가능)

서로 다른 국가에 위치한 같은 은행의 지점들은 다른 은행으로 간주

한국 소재 A은행이 개설한 신용장에 대해 홍콩 소재 A은행에 서류 제시는 개설 은행에 대한 서류제시로 볼 수 없다. (혼선 방지)

- 동일 국가에 있는 같은 은행의 지점은 동일 은행으로 간주
- 신용장상 지정은행이 한국 하나은행 전주지점으로 되어 있는 경우, 한국 하나은행 전주지점은 물론 다른 어떤 지점에서든 매입을 할 수 있다.
- 따라서 신용장에 매입 제한을 두는 경우 개설은행이 동일 국가에 있는 특정 은행의 특정 지점으로 제한하지 말고 특정 은행만으로 제한을 두어야 함

■ 제3조 주요 내용

서류 발행자를 표현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각종 용어들은 수익자를 제외하고, 해당 서류를 발행하는 모든 서류 발행자가 사용할 수 있다.

서류 발행인의 자격을 모호하게 함으로 인한 혼선을 방지. 개설의뢰인이나 개설은행의 의도가 서류 발행자의 자격을 어느 정도 제한하려는 의도인 경우에는 이러한 모호한 표현을 쓰지 말고, 서류 발행자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함

기간 계산표현의 변경

선적기간과 관련해 'to', 'until', 'till', 'from'이 사용된 경우에는 언급된 일자를 기간 계산에 포함시키고 'after'가 사용된 경우에는 언급된 일자를 기간 계산에 포함시키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이를 변경하여 after는 물론 from도 언급된 일자를 제외하도록 변경하였다.(UCP 600 제3조)

■ 문3-19 수익자 증명

- T/T 등의 거래에는 없고, 신용장을 이용하는 거래에서 수익자가 신용장상에서
- 요구하는 행위 등을 하였음을 스스로 증명하는 서류
- 예를 들어 선적하고 바이어에게 선적통지나 선적서류를 발송하는 등의 행위는
- 수익자가 직접 하는 행위이므로 제3자의 공식문서로 받을 수 없음.
- 따라서 실제와 다른 경우 문제를 제기할 근거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수익자가 그러한 행위를 하였음을 스스로 입증하는 문서를 만들어 보내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음
- 일종의 각서

■ 제3조 주요 내용

BENEFICIARY'S CERTIFICATE

DATE :

L/C NO. :
COMMODITY :

QUANTITY :
AMOUNT :
DESTINATION :
NAME OF VESSEL
ON BOARD DATE :

WE HEREBY CERTIFY THAT

SIGNED BY _____

제4조 신용장과 계약

제4조

■ 제4조 조문 해석

제 4조 신용장과 계약

a. 신용장은 그 성질상 그것이 근거될 수 있는 매매계약 또는 기타 계약과는 독립된 거래이다. 은행은 그러한 계약에 관한 어떠한 참조사항이 신용장에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계약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으며 또한 이에 구속되지 아니한다.

결과적으로 신용장에 의하여 지급 이행하거나, 매입하거나 또는 기타 모든 의무를 이행한다는 은행의 약속은 발행은행 또는 수익자와 발행의뢰인과의 관계로부터 생긴 발행의뢰인에 의한 클레임 또는 항변에 지배 받지 아니한다. 수익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은행상호간 또는 발행의뢰인과 발행은행간에 존재하는 계약관계를 원용할 수 없다.

b. 발행은행은 신용장의 필수적인 부분으로서, 근거계약의 사본, 견적송장 등을 포함시키고자 하는 어떠한 시도도 저지하여야 한다.